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9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임광현·황정아·박홍배

이정문 • 이기헌 • 조계원

김남희 • 박성준 • 이건태

조승래 · 노종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 등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

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 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 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다목까지"를 "라목까지"로 한다.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안교육기관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 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교 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u>.</u>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1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생 략)

<신 설>

<u>나.</u> ~ <u>라.</u> (생 략)

-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 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 산한 금액
 - 가. 제1호가목부터 <u>다목까지</u> 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 비

나. ~ 라. (생 략)

3. (생략)

④ ~ ①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
관에 지급한 교육비
<u>다.</u> ~ <u>마.</u>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2
가 <u>라목까지</u>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